39.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: 2019년 10월 2일

○ 제 안 자 : 홍인표, 김동식, 김성태, 김원규, 김재우, 김지만, 이만규, 임태상, 전경원 의원

○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8일

○ 상정일자

- 대구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

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19년 10월 16일) :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홍인표 의원)

□ 제안이유

○ 본 조례는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의 제고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,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이 일부 불합리하고 명확하지 아니한 등 제도의 운영에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.

○ 이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, 심의·자문사항 등의 전반에 대해 정비하고,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, 공공디자인 진흥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함. (안 제1조)

○ 조례에서 사용하는 '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'의 약칭을 '진흥계획'에서 '지역계획'으로 변경하여, 법에서 사용한 약칭과 일치시키고,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'종합계획'과의 위계를 명확히 함. (안 제5조)

○ 법에서 설치하도록 한 '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'(이하 "위원회")의 구성방법과 임기, 심의·자문사항, 회의 및 운영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, 소위원회의 심의와 디자인 협의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, 위원의 해촉이나 수당지급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해, 관계법령과의 정합성이

유지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함. (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)

○ 시장으로 하여금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인증제품의 사용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우수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확산을 도모함. (안 제20조)

○ 지속적인 공공디자인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시책마련을 요청하고,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자료제작, 교육, 홍보 등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여, 관계기관과 유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업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함. (안 제21조)

□ **참고자료**

○ 관계법령 :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김학수)

□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○ **안 제1조**는 조례의 목적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통해 추구

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**안 제2조**는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용어를 정의하고자 함.

□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 등(안 제5조)

○ **안 제5조는** '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'의 약칭을 '진흥계획'에서 '지역계획'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약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.

□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(안 제7조 ~ 제13조)

○ **안 제7조제2항, 제5항은**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,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 참여시켜 매월 개최되는 위원회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, **안 제7조제6항은**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.

* 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(안)

종전 :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

변경 : 위원장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, 10명 이상의 지정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

○ **안 제8조제2항** 위원회의 디자인 심의대상 제외사항을 규정한 것은 디자인 협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**안 제9조제2항, 제3항**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, **안 제11조** 소위원회에서 심의(의결) 기능을 삭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.

□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(안 제20조 ~ 제21조)

○ **안 제20조**는 시장은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그 인증제품의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우수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확산을 도모하고, 연감 제작·배부 및 전시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며,

○ **안 제21조**는 시장은 지속적인 공공디자인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시책 마련 요청과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

□ **종합 검토의견**

○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「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,

○ 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의 심의와 디자인 협의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삭제하고, 위원 해촉, 수당 지급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각종

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방법, 임기, 심의·자문사항, 회의 및 운영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면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법적 근거가 없는 소위원회의 심의(의결) 기능을 삭제한 것은 타당해 보이나, 소위원회 기능이 모호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, 향후 소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, 디자인 협의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향후 위원회 운영시 디자인 심의와 협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○ 아울러, 주요 공공디자인 진흥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 시에는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규정과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운영규정을 신설한 것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, 우수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확산을 유도하여 품격 높은 도시 이미지 창출 추진 의지로 보여짐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이유는?	○ 현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·운영하고 있으나, 심의 내용에 따라서 조경, 시각, 산업디자인 등의 분야에는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위원회 구성을 40명으로 확대한 것임.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○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